#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3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 남인순 · 양이원영 · 권칠승

윤재갑 • 박영순 • 이원택

인재근 · 김영배 · 박성준

김영호 · 강선우 · 윤미향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영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양도·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조치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88조제3항).

#### 법률 제 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하려는 경우"를 "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도 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하려는 경우"를 "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도 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제3항 중 "제40조"를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 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 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 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 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 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 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 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 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 ·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 려는 경우. 다만, 부도 또는 파 려는 경우 <단서 신설> 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 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 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8.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없다.
- 1. · 2. (생략)
-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 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 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 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 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 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 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단서 신설>

5. ~ 8. (연행과 샅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하려는
경우. <u>다만,</u> 부도 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 전

4. • 5. (생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생략)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 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22조, <u>제4</u> 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 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 ⑦ (생 략)

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
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4.·5. (현행과 같음)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현행
과 같음)
3
제3
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
<u> 조</u>

④ ~ ⑦ (현행과 같음)